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5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한민수・박상혁・이춘석

이연희 · 임오경 · 최민희

서영교 • 박용갑 • 허종식

안규백 • 한준호 • 이해식

박균택・박해철・황정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구글,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스마트폰 구동의 필수요소인 운영체제(OS)를 독점하여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모바일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은 강제적 인앱결제를 통해 높은 독점가격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해왔음.

반면, 유럽의 경우 디지털시장법(Digital Markets Act)을 통해 독점적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수단 등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였고, 그 결과 경쟁상황에놓인 사업자 스스로 앱 마켓 수수료를 낮추게 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.

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

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9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·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"라한다)의"를 "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·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"라 한다) 및 이용자의"로 한다.

②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(유도, 안내, 홍보 등을 포함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.

제50조제1항제9호 중 "강제하는 행위"를 "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(유도, 안내, 홍보 등을 포함한다)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행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앱 마켓사업 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개 아 혅 정 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) ① (생 략) 및 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 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 (유도, 안내, 홍보 등을 포함한 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 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 간(이하 "앱 마켓"이라 한다)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・판매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・판매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"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" 라 한다)의 보호 등을 위하여 라 한다) 및 이용자의-----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 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 제50조(금지행위) ① -----

업자(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 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금지 행위"라 한다)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 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

10.·11. (생략) <u><신</u> 설>

<u>.</u>
1. ~ 8. (현행과 같음)
9
강제하거나 모바일콘
<u>텐츠</u>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
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
을 사용(유도, 안내, 홍보 등
을 포함한다)하는 것을 제한
또는 금지하는 행위
10.・11. (현행과 같음)
12.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
<u>12. 1 C C C </u>

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

 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

 유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

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

 이익을 주는 행위

 ②・③ (생략)